

공무원임대주택 심사대상자 증빙서류 제출 매뉴얼

【 온라인으로만 제출 가능하며, 제출기간을 반드시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주신청서 제출 후 심사대상자 발표

- 신청자가 작성한 입주신청서를 토대로 선정한 심사대상자를 대상으로 가점 증빙서류 심사 후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https://www.geps.or.kr>)와 신청자의 휴대폰 SMS로 예비대상자를 알려드립니다.
- 홈페이지 상단메뉴 중 『알림과 소통』→『공지사항』→『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The screenshot shows the main navigation bar of the Geps.or.kr website. The menu items include 정보공개, 경영공시, 고객참여와 상담, 알림과 소통 (highlighted in red), 연금정보, 사업안내, and 공단소개. Below the menu is a grid of service links:

정보공개란	경영공시개요	서비스 안내	공지사항 ①	연금소식	연금사업	열린CEO
사전정보공개	기관운영	문서확인 및 조회	뉴스룸	동계자료	재해보상	우리공단은
정보공개청구	경영성과	채팅상담	입찰/계약	연금자료실	은퇴지원사업	조직도및직원검색
공공데이터개발	주요사업	각종서식	채용공고	연금이야기	증자사업	홍보및미디어
원문정보공개	내외부평가및감사	국민제안		유용한 연금정보	복지시설사업	E-S-G 경영
	공무원연금기금	신고센터		행정구제	제휴복지사업	찾아오시는길
	금융자산운용	연금통통			후생복지사업	
	기타공시사항	캡스톡 (온라인간담회)			주택사업	

The screenshot shows the 'Notice' section of the Geps.or.kr website. The title is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On the left, there is a sidebar with categories like 공지사항 (highlighted in blue) and sub-links such as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The main content area shows a list of applicants with details like name, address, and application date. A search bar at the top right allows users to search by name or date.

번호	제목	첨부	등록일	조회수
275	[임주대기자 선정·발표] [정기공고, 전국] 2022년 4분기 공무원임대주택 임주대기자 모집 (2022.10.04.)	↓	2022.11.25	5074

① 『알림과 소통』 → 『공지사항』 클릭

② 『공지사항』 → 『임대주택입주자모집』 클릭

※ 임대주택 입주관련 사항은 홈페이지 해당화면에 공지합니다.

※ 심사대상자는 관련 서류를 기한(24.09.02)까지 시스템 업로드를 통해 제출하셔야 합니다.

- 제출하지 않은 서류는 가점 심사에서 제외합니다.
- 지정된 파일형식 외 다른 형식으로 제출하였거나 스캔불량 등은 가능한 경우 서류 심사는 진행하나, 관련된 책임(파일 열람불가 및 육안 확인불가 등)은 신청자 본인 귀책임을 알려드리오니 제출 완료 후 다시 한 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신청자는 홈페이지 메인화면 우측 하단의 “연금 복지포털 바로가기”를 클릭합니다.



3. 인증서 로그인 합니다.

The first screenshot shows the main menu with the '연금복지포털' logo. It features sections for '공무원 연금업무 서비스 포털' (with '기관연금 담당자' and '담당자 권한신청 →'), '공무상요양부터 재해보상까지 종합재해보상포털' (with '바로가기 →'), and '은퇴공무원을 위한 사회공헌 G-시니어포털' (with '바로가기 →'). A red box highlights the '로그인' button. Below it, a message says '로그인을 하시면 연금조회·신청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The second screenshot shows the '인증서 로그인' section of the '통합로그인 센터'. It has tabs for '아이디 로그인', '간편인증 로그인', '인증서 로그인' (which is highlighted in blue), '모바일공무원증 로그인', and '비회원 로그인'. Below these tabs, there are three sub-options: '인증서 로그인', '브라우저인증서 로그인', and '금융인증서 로그인'. A red box highlights the '인증서 로그인' tab.

4. 연금복지포털의 상단 메뉴 중

『복지서비스』→『주택임대/분양』→『임대주택』→『임대주택 모집 공고(신청 등)』→『모집공고 신청(현황 등)』 클릭

연금서비스	복지서비스	민원서류발급	마이페이지
융자사업	주택임대/분양	연금교육	후생복지서비스
연금대출	임대주택	교육과정신청 현황조회	출산용품지원
대여학자금	임대주택 모집 공고(신청 등)	신청확인/온라인교육수강/고지서/수료증	가정친화 프로그램
대출증명서내역 조회	모집 공고 신청(현황 등)	온라인 연금교육 바로가기	민원담당공무원 법률상담
융자추천서 발급 신청	순위 및 퇴거세대조회		이벤트 응모하기
	계약체결/포기서 제출		이벤트 응모내역
	가점대상자 증명서 제출		
	임대주택 모집공고(정기) 관심고객 등록		

5. 입주신청서 조회

공고번호	공고명	공고일자	신청시작일시	신청종료일시	심사대상자 배수	입주 지정기간	심사서류 제출기간	진행상태	본인신청여부
2022120006	2022.12.05. TEST 공고	2022-12-05	2022-12-05 09:00:	2022-12-05 02:00:	1.5	30	7	공고결재완료	③ Y

- ① “모집 공고 신청(현황 등)” 화면에서 “본인신청여부” 체크
- ② “조회” 버튼 클릭하시면 신청하신 공고가 표시됩니다.
- ③ 조회 된 공고에서 본인신청 여부란 “Y” 클릭하시면 입주신청서 작성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6. “심사자료 제출” 버튼 클릭

- 모든 심사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유효합니다.
- 신청자의 심사제출자료는 공고문 또는 “가점 심사대상별 제출서류 (8page)”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사서류목록”에 표시되지 않더라도 반드시 본인이 신청한 가점별 심사 자료는 제출하셔야 합니다.
- 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신청자는 입주신청서 상단에 “심사서류제출” 버튼을 클릭합니다.

접수번호	202212050001	공고번호	2022120006	공고명	2022.12.05. TEST 공고		
공고일자	2022-12-05	신청시작일시	2022-12-05 09:00	신청종료일시	2022-12-05 02:00	공고진행상태	공고심사

- ① 입주신청서 우측 상단의 “심사서류체출” 클릭하시면,

심사서류제출

X

제출요청일	2023-07-10	제출기한	2023-07-17	저장						
심사서류목록 (2)										
순번	목록									
1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 <table border="1"> <thead> <tr> <th>파일명</th> <th>파일크기(byte)</th> <th>등록일자</th> </tr> </thead> <tbody> <tr><td colspan="3"></td></tr> </tbody> </table>					파일명	파일크기(byte)	등록일자			
파일명	파일크기(byte)	등록일자								
혼인관계증명서(예비신혼부부입주신청서) <table border="1"> <thead> <tr> <th>파일명</th> <th>파일크기(byte)</th> <th>등록일자</th> </tr> </thead> <tbody> <tr><td colspan="3"></td></tr> </tbody> </table>					파일명	파일크기(byte)	등록일자			
파일명	파일크기(byte)	등록일자								
기타 <table border="1"> <thead> <tr> <th>파일명</th> <th>파일크기(byte)</th> <th>등록일자</th> </tr> </thead> <tbody> <tr><td colspan="3"></td></tr> </tbody> </table>					파일명	파일크기(byte)	등록일자			
파일명	파일크기(byte)	등록일자								

② 신청자가 제출해야 할 “심사서류목록”이 나오고,

③ 해당 서류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 개인별 화면에 나타나는 「심사서류목록」은 예시입니다. 본인이 심사요청 한 개인별 가점별 심사(증빙)자료를 이 화면에서 제출하여 주셔야 합니다.

- “심사자료 제출” 단계에서 제출된 서류만 가점 부여의 대상이 되오니, 정상 업로드 여부 확인바랍니다.

7. 심사서류 파일 제출

심사서류제출

제출요청일: 2023-07-10 제출기한: 2023-07-17

① 파일추가 **② 저장**

순번	목록
1	가족관계증명서(상세)

① 파일추가 **② 저장**

파일명	파일크기(byte)	등록일자
가족관계증명서(상세)_홍길동.pdf	99,472	2023-07-10 0%

① 파일추가 **② 저장**

파일명	파일크기(byte)	등록일자

- ① "심사서류목록"의 증빙서류를 "파일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증빙서류를 등록합니다. (심사서류목록은 신청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 ② "심사서류목록"의 증빙서류를 모두 등록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종합재해보상포털 | G-시니어 | geps.or.kr의 메시지 | 업무지원시스템 | 인증센터

저장 되었습니다.

③ 확인

④ 닫기

제출요청일: 2023-07-10 제출

③ 확인

순번	목록
1	가족관계증명서(상세)

③ 확인

파일명	파일크기(byte)	등록일자
가족관계증명서(상세)_홍길동.pdf	99,472	2023-07-10

③ 확인

파일명	파일크기(byte)	등록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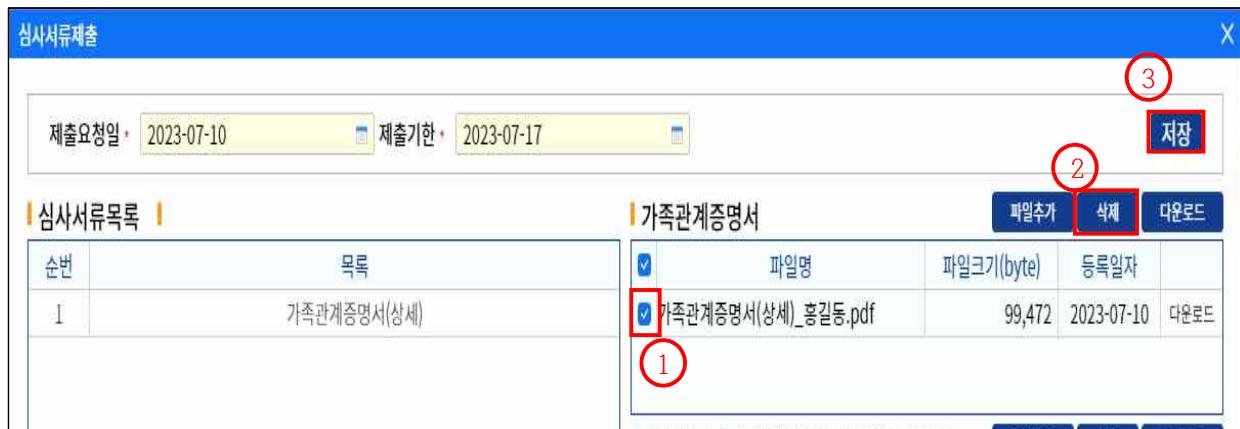
입주 심사 대상자 선정 포기에 동의합니다. **④ 닫기**

- ③ "확인" 버튼을 누르시고,
- ④ "닫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심사서류 제출은 완료됩니다.

※ 증빙서류는 **모집공고일(24.08.14.) 이후 발급된 서류를 기한 내 제출된 경우만 인정됩니다.**

- 시스템에 업로드 된 서류만 심사대상 서류가 됩니다. (메일, 팩스 등 직접 발송자료 불인정)
- 지정된 파일형식 외 다른 형식으로 제출하였거나 스캔불량 등으로 인한 책임(파일 열람불가 및 육안 확인불가 등)은 신청자 본인의 귀책임을 알려드립니다.

8. 심사서류 삭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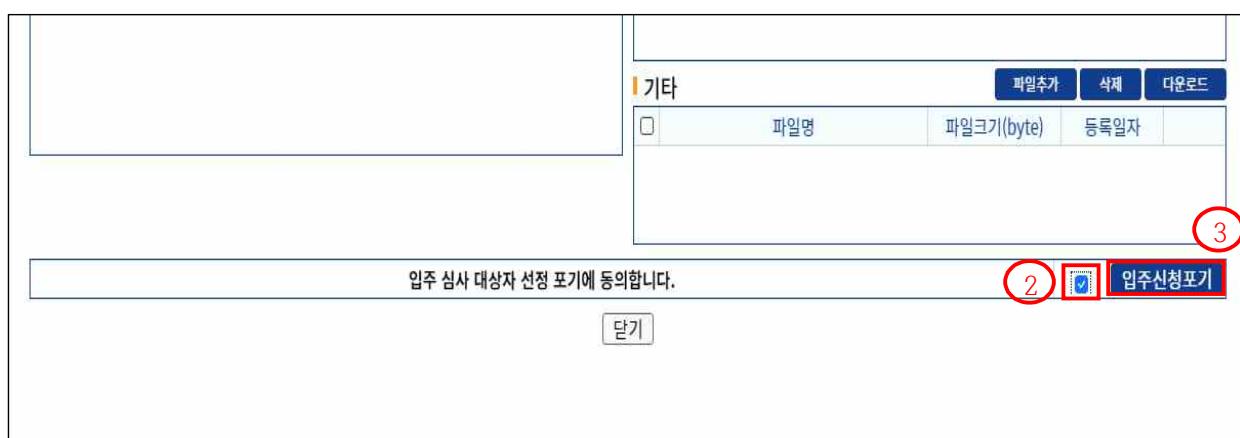
- ① “파일정보” 의 증빙서류를 삭제하시려면 삭제를 원하는 파일의 “체크 박스” 를 체크해 주시고,
- ② “삭제” 버튼을 클릭 후, ③ “저장” 을 누르시면 삭제가 완료됩니다.
※ 삭제 후 새로운 증빙서류를 첨부하실 때는 “7. 심사서류 파일 제출” 로 돌아가서 다시 순서대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9. 입주신청 포기

- 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신청자의 사정으로 입주 신청을 포기할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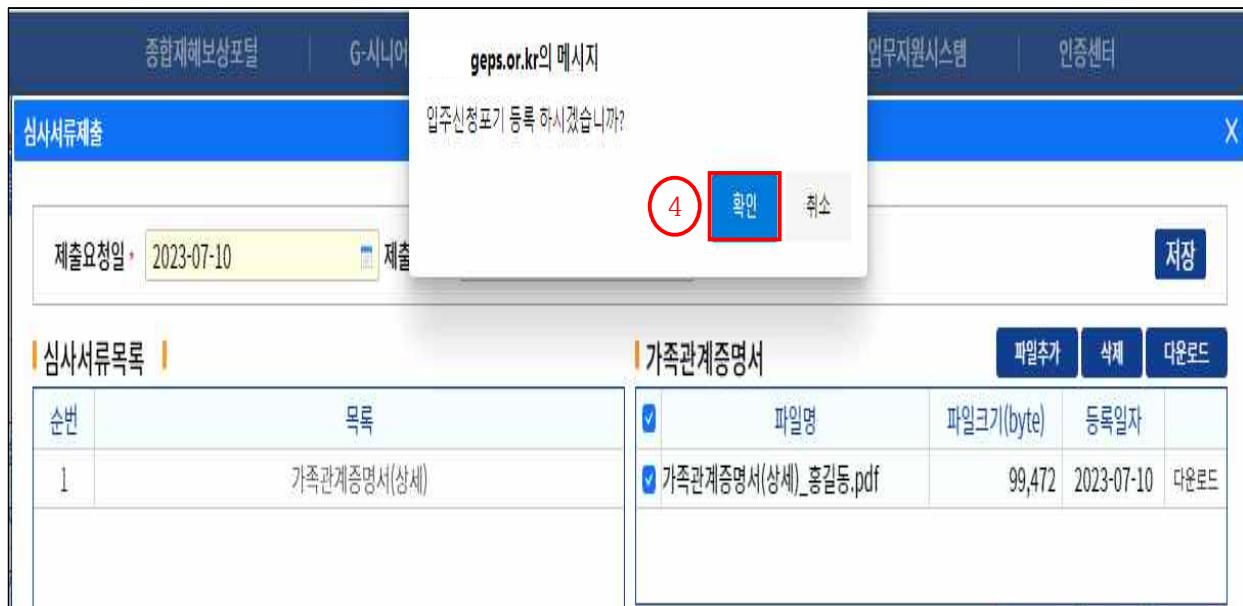


- ① “심사서류제출” 버튼을 클릭해 주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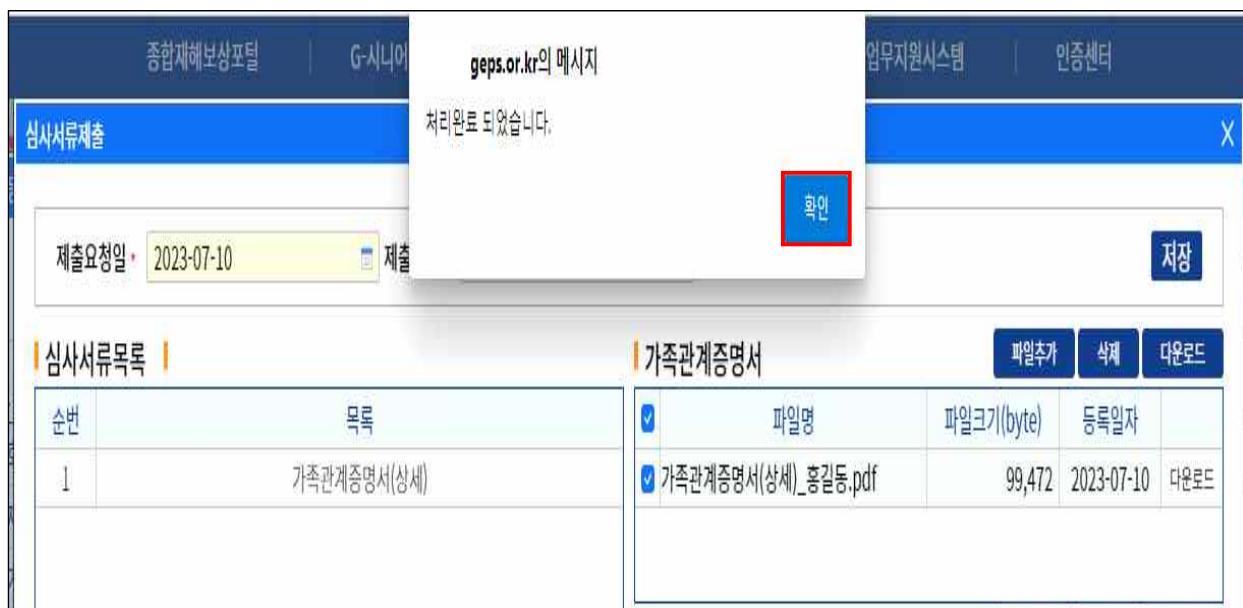


- ② “입주심사 대상자 선정 포기” 박스를 체크해주시고,

③ “입주신청포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아래와 같은 안내문구가 나옵니다.



④ “확인” 버튼을 클릭하시면 “처리완료” 안내 문구가 나오며 “처리완료” 안내 문구의 “확인” 버튼을 클릭하시면 입주신청포기가 완료됩니다.



- ※ 입주신청 일부 진행 후 포기 시 전산상 신청포기 완료여부를 꼭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든 개인정보 · 자료 등이 삭제되오니 신청 포기 전 필요하신 정보 등은 본인 책임 하에 저장하여 두시기 바라며, 본인의사와 반하게 신청되는 경우가 없도록 삭제완료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가점 심사대상별 제출서류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

※ 모든 서류 공고일(‘24.08.14.) 이후 발급분만 인정(단, 신규임용의사공무원 서류 및 순직결정서 제외)

구 분	필요서류						
공통 (필수서류)	<p>① 신청자 본인 기준의 <u>가족관계증명서(상세)</u> 1부. ※ 상세로 발급 필요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제출 불필요하나, 순직공무원 유족 가점을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필수)</p> <p>② [만 30세 이전 혼인자] 신청자 본인 기준의 혼인관계증명서 (무주택간신증용 미제출시 무주택 산정 시 불이익 받을 수 있음)</p> <p>※ 공고일 이후 주민등록등본의 세대구성원 변경 시 소명자료 제출필수 (가족구성원 모두의 초본 등 본인소명 필요, 미소명시 세대병경 사유 확인불가로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p> <p>※ 외국인 세대원의 경우 다음 서류 추가 제출 필수: ①외국인 거소증 혹은 등록증, ②주민등록등본</p>						
전국무주택 기간	해당 없음(국토교통부 전산정보 활용)						
가구 월평균소득	해당 없음(국민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 전산자료 활용)						
양육가정 (태아)	<p>① <u>임신진단서</u> 1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성년이나 영유아 자녀에 <u>태아를 포함</u>하여 점수를 산정한 자 						
신혼부부	<p>① <u>혼인관계증명서</u> 1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 30세 이전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혼인신고일로부터 산정한 자 ※ 現 배우자와의 혼인신고일이 아닌 경우 상세로 발급 - <u>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u>로 점수를 산정한 자 						
주거약자 가정	<p>① 장애인등록증 등 <u>주거약자임을 증명하는 서류</u> 1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약자 가점 점수를 산정한 자 (<u>주민등록표상 6개월 이상 함께 등재</u>) <p style="text-align: center;">“장애인 · 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주거약자법)”에 따른 주거약자의 범위</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padding: 5px;">가. 65세 이상인 사람</td> </tr> <tr> <td style="padding: 5px;">나.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td> </tr> <tr> <td style="padding: 5px;">다.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급 ~ 7급)</td> </tr> <tr> <td style="padding: 5px;">라. “보훈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보훈대상자(상이등급 1급 ~ 7급)</td> </tr> <tr> <td style="padding: 5px;">마.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따라 등록된 부상자(신체 장해등급 1급 ~14급)</td> </tr> <tr> <td style="padding: 5px;">바.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에 따른 환자로서 경도장애 이상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td> </tr> </table>	가. 65세 이상인 사람	나.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다.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급 ~ 7급)	라. “보훈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보훈대상자(상이등급 1급 ~ 7급)	마.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따라 등록된 부상자(신체 장해등급 1급 ~14급)	바.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에 따른 환자로서 경도장애 이상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가. 65세 이상인 사람							
나.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다.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급 ~ 7급)							
라. “보훈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보훈대상자(상이등급 1급 ~ 7급)							
마.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따라 등록된 부상자(신체 장해등급 1급 ~14급)							
바.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에 따른 환자로서 경도장애 이상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한부모가정	<p>① <u>한부모가족증명서</u> 1부. ※ 발급 : 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 정부24홈페이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부모 가점 점수를 산정한 자 <p>(가족관계증명서상 배우자 없이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제출 불필요)</p>						
신규임용 의사공무원	<p>① <u>의사면허증, 임명장, 발령장</u> 각 1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용 5년 이내 국립병원 또는 교정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사공무원으로 가점 점수를 산정한 자 						
순직공무원 유족	<p>① <u>순직결정서</u> 1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순직이 결정된 공무원의 유족으로 점수를 산정한 자 						

※ 서류제출 미비로 인한 부적격 사례가 많습니다만, 제한된 일정에 따라 진행되는 업무 특성상 개별 자료보완 요청은 불가합니다. 반드시 공고문 및 가점 증빙서류 적정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